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18
----------	-------

발의연월일 : 2025. 9. 5.

발 의 자 : 용혜인 · 김 윤 · 양부남
서왕진 · 김남희 · 서미화
박정현 · 이광희 · 오세희
정혜경 · 이연희 · 손 솔
전종덕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고인의 구속사유를 주거 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로 국한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속이나 석방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구속영장 심사에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반영되기 어렵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피해자가 보복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미국, 영국 등 다수 선진국은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피해자 보호와 공공의 위험 방지를 구속제도의 목적으로 인정하고, 구속제도 전반을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고인의 구속사유에 피해자 및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포함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 등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속의 사유에 피해자 및 그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때를 포함함(제70조제1항제4호 신설 등).

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며 대리인을 통한 진술과 서면 제출을 통한 진술을 보장함(제294조의2제1항 및 제4항 등).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을 “등을”로 한다.

4. 피해자 및 그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때 제29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를 “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및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第1項의”를 “第2項의”로 한다.

② 법원 또는 판사는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

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 등의 진술로 인하여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원 또는 판사는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2항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피해자 등은 변호사 또는 그 밖에
상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
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第70條(拘束의 事由) ① 法院은 被告人이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고 다음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被告人을 拘束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u>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u> ③ (생략) 第294條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第70條(拘束의 事由) ①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피해자 및 그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때</u> ② ----- ----- -----<u>등을</u>----- -----. ③ (현행과 같음) 第294條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 ----- ----- ----- ----- ----- -----은 구속 전 피의자 심

그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피해자들 이미 당해 事件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陳述하여 다시 陳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들의 陳述로 인하여 公判節次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들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및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서 삭제>

1.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② 법원 또는 판사는 피해자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해자들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 등의 진술로 인하여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

③ <u>法院은 동일한 犯罪事實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者의 數를 제한할 수 있다.</u> <u><신 설></u> ④ <u>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人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申請을 撤回한 것으로 본다.</u>	<u>려가 있는 경우</u> ③ <u>법원 또는 판사는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2항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u>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피해자 등은 변호사 또는 그 밖에 상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u> ⑤ <u>第2項의</u>----- ----- ----- ----- -----.
---	--